

수원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가단5209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상원

변 론 종 결 2024. 10. 8.

판 결 선 고 2024. 12. 3.

주 문

1. 피고와 C이 화성시 D아파트 E호의 1/2 지분에 관하여 2023. 9. 27.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화성시 F, E호]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3. 11. 20. 접수 제2731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 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3. 9. 27. 사망하였다. 피고와 C이 망인을 상속하였고, 각 법정상속분은 1/2이다.
- ②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화성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있었다.
- ③ 피고와 C은 망인 사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3. 11. 20. 접수 제273101호로 2023. 9.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④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8046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 10. 4. ‘피고(C)는 원고에게 87,085,000원 및 그 중 11,74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21.부터, 3,476,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22.부터 각 2023. 7. 19.까지는 연 5%의, 위 87,085,000원에 대하여 202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10. 26.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 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은 무자력 상태였다.
- ⑥ 피고는 H에게 2023. 12. 26.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24.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망인의 사망일인 2023. 9. 27. 후에 사망신고일인 2023. 11. 3. 사이에 망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91,984,003원에 이르는 채무를 발생시켰고, 피고가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C의 다른 채권자인 I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에 의한 가처분신청을 하여 피고가 위 회사에 대한 C의 채무 7,100,000원을 대신 변제하기도 하였고, C의 벌금과 영치금 합계 1,700,00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C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C이 망인 사후에 망인 명의로 발생시킨 채무 등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이 망인 사후에 망인 명의로 발생시킨 채무까지 피고가 공동으로 상속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C이 발생시킨 망인 명의의 채무를 확실히 변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담보로 추가로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취득한 뒤 처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분할협의를 망인의 일체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으로서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에 해당하는 점,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로서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은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 근거한 것 인바(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황과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할협의를 형평과 도덕적 관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① C이 망인 사후에 망인 명의를 도용하여 발생시킨

채무들에 관해서는 망인이 법적으로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피고가 위 망인 명의의 채무를 상속받지도 않는바, 피고는 C이 발생시킨 위 망인 명의 채무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위 채무가 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 채무 상속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채무 상속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 분할협의 및 이 사건 부동산 처분을 통해 위 채무를 우선하여 변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자기 재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이 잠정적으로 상속받은 C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행위로서, C이 구상금 채권자가 될 피고(또는 피고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을 C의 일부 채권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③ C의 행위는 결국 망인 사후에 망인 명의로 거액의 채무를 일으킨 후 이를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변제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는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 부담을 총체적으로 포기하는 상속 포기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상속받아 즉시 전부 탕진한 것에 가까운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C의 사해의사 추정이 반복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에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4호증(가시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와 자매관계로 망인의 사망 이후 C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며 C의 채무관계에 대해 추궁하였던 점, ②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에도 C의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으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C의 재산 상태를 어느 정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용희